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5.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01.14 공포·시행)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 지가공시법)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함.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제2조)
- 위원회 기능(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공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1조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경상북도 주택지적과-1649(2005.01.28)호의 조례개정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의견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시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 5. 위원별 발언요지
- 6. 심의결과
-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심의·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